

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등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62조 등에 의거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6.

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, 부당이득 등의 반환금 독촉고지서 등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험료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7. 6. ~ 2026. 7. 20.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(11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박선희(Tel. 02-2142-88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